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4. 20.(월) 14:31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1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지금부터 2020년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형환 위원님, 공개로 진행되는 첫 번째 회의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난 3월 말까지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계셨고, 후임으로 안형환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4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위원회와 함께 동고동락해 오신 김석진 前 부위원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합류하신 안형환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은 그간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저희 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안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관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예.

○ 안형환 상임위원

-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대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국회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었습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그 취지에 맞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 한상혁 위원장

- 감사합니다.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제1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4-2.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 한상혁 위원장

- 국회에서 2020년도 제18차 전체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및 속기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로 진행된 「(주)채널에이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를 참고하여 명예훼손 관련 개인·법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 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0-20-099)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 지원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조선방송 <1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하여 재승인을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붙임1>과 같이 방송연장을 명령합니다. <2안>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해 <붙임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승인 유효 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붙임2>의 재승인 조건 중 <2>번, <3>번, <4>번, <5>번 항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2>번 조건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개선계획으로 제출한 일진, 이진, 삼진아웃제 운영은 보도 장르에 모두 적용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품격제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구현 등입니다. 추가개선계획은 저널리즘 평가

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이진·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클럽 객관성 강화방안,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방안 등입니다.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를 것입니다. <3>번 조건입니다. 재승인 신청서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재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2>번 조건의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4>번 조건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입니다. 20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새로 추가된 제21조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건수에만 포함합니다. <5>번 조건입니다.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채널에이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채널에이에 대해 <불임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한다.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이 2020년 4월 21일 만료되는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 사항은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주)채널에이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고, 4월 10일 (주)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명단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주)조선방송은 653.39점, (주)채널에이 662.95점을 획득하였으나 (주)조선방송은 <2>번 중점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평가점수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습니다. 방송사업자별 심사사항별 배점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 소견입니다. 2017년에 비해 콘텐츠의 질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향후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이 묻는다”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시청자들은 여전히 종편·보도PP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도의 공정성의 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투자 등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콘텐츠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심사 사항별 소견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청자가 종편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비해 사업자의 인식은 뒤떨어진 상태 이므로 공정성과 관련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며, 객관성·진실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여론 다양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의견반영,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여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위원 구성이 미디어 관련 학과 교수나 현업 종사자들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시청자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매우 미흡하므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비평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고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채널에이는 유사한 위원회와 각종 TF(공정심의위원회와 공정 보도심의위원회, 공정선거TF) 등을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검증장치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편·보도PP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편성·보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조선방송의 최대주주인 조선일보사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그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채널에이의 최대주주사 임원과 직원의 겸임 및 교류가 타 종편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편PP가 홈쇼핑방송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동시간대에 건강 등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 혼동 및 혼동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편PP는 협찬을 받아 방송을 하는 경우 협찬 받은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하여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조선방송이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웃제’ 같은 제도는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채널에이는 Killer Content의 개발을 위해 편성·제작의 노력과 제작자원의 투입전략이 필요하며 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 각각 최초 승인 당시 주주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해당 법인과 최대주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조선 방송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은 지난 4월 10일 14시부터 진행을 했고, 청문주재자는 성공회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선영 교수가 주재하셨습니다. 참석자는 (주)조선방송의 김민배 대표이사, 그리고 (주)조선일보사의 홍준호 대표이사 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 측의 의견진술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성·공적책임 분야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결과는 보다 훌륭한 방송을 만들라는 공적 주문으로 생각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청문에서 지적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학계·변호사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7~8명의 외부인사로 저널리즘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내부 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위원 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반론이 있는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보도본부 내 간부급 팩트체크장을 두고, 팩트체크장이 현장 취재기자의 리포트를 확인해서 출고할 자격이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구조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보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책무 등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를 외부인사 출신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회 판단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청문주재자는 (주)조선방송은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저널리즘 평가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되는 사후평가 조직이고, 팩트체크장은 내부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개선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제재 건수가 타 종편PP에 비해 여전히 많고, 오보·막말 등으로 방송품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프로그램에 아웃제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주)조선 방송이 '17년도 이후 다양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이번 심사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무 개선을 위해 집행 및 의결기구 등 지배구조 개선이 유효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경영진의 교체'나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을 제안하였으나 (주)조선방송은 추가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조선방송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적책무·공정성 관련 문제의 개선 의지가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재승인 거부'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의견으로 만약 행정청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인유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다음번 재승인 시에도 총점이 미달하거나 중점심사사항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주)조선방송입니다. (주)조선방송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이 묻는다"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에서도 시청자들은 (주)조선방송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으나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의견청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업자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청문주재자도 청문을 통해 (주)조선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개선계획이 오보·

막말·편파 방송 문제를 개선하기에 역부족이고, 공적책무 이행에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을 반복·답습하는 수준이며, 공적책무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조선방송 전반에 고루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주재자는 (주)조선방송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재승인 거부’가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2020년도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점심사사항은 과락이었으나, ’17년도 재승인 이후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방송평가점수가 점차 상향되고 있고, 이번 심사결과 총점이 650점을 넘긴 점,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승인을 거부하기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선방송의 사업계획서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계획 분야를 재작성하고,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승인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되, 청문주재자가 (주)조선방송에 제안한 사항 중 방송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각종 내부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라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 조건에 추가하여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조선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된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된 아래의 주요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박스의 주요 조건은 의결주문 <2안>에서 말씀드린 조건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할 경우에는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 까지 3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채널에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채널에이는 과락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한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나 (주)채널에이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주)채널에이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포함이 필요하다는 방통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주)채널에이는 진상조사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취재진실성·투명성 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에게 추가 조사 요구권과 관련자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 사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채널에이가 재발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취재윤리 위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승인을 의결하되, 조사 종료 후 그 결과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총점이 650점을 넘은 점, 과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승인 유효기간은 4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중점심사사항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관련된 조건은 (주)조선방송의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아래 주요 재승인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2>번 항목은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의 내용이 (주)조선방송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주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6>번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과 관련하여 향후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7>번은 (주)조선방송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8>번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조선방송의 경우 <1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4월 중에 방송연장명령을 할 계획이고, 4월 중에 (주)조선방송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할 경우, (주)채널에이 재승인의 경우 승인장을 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그중 <2>번과 <3>번이 각각 사업자에 대한 주요 조건과 권고사항입니다. <붙임> <2>번을 먼저 보시면 <1>번 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 승인을 받으라는 일반적인 조건 항목입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그리고 <4>번, <5>번까지는 아까 보셨던 주요 조건입니다. <6>번 항목은 편성위원회를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7>번은 상품 등의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았다는 내용을 고지하라는 조건이고, <8>번과 <9>번은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관련해서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심사 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고사항 관련해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1>번 항목은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의 목록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입니다. <2>번 권고 사항은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항목은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3>의 (주)채널에이 조건을 보시면 <1>번 항목은 (주)조선방송의 항목과 동일하고, <2>번 항목도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의 세부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관련해서는 취재윤리 위반 건과 관련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항목, <8>번, <9>번, <10>번, <11>번 항목까지는 TV조선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12>번, <13>번 항목도 동일하고, 권고사항은 <1>번, <2>번, <3>번, <4>번 4가지 권고사항이 있는데 전부 TV조선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 ○ 표철수 상임위원

-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2개 방송사업자입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많고, 조건 부여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저 TV조선부터 말씀드리고 그 이후 채널A에 대해서 의견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안건 대상인 TV조선은 지난번 재승인 때 와는 달리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총점이 650점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이 되었는데 기준점수에서 소수점 단위의 근소한 차이로 과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보·막말·편파 방송과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하로 유지하도록 부가했던 조건을 지켰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조건부 재승인을 해서 앞으로 더 공익적이고 보다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실무진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지난해 5월에 의결한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700점 이상일 경우는 5년, 650점 이상은 4년, 650점 아래는 3년으로 했고, 당시 과락에 대한 단서는 없었는데 TV조선에 대해서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점 미만을 받았는데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에는 3년을 부여한다고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과락으로 인한 조건부 재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3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조건들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 안형환 상임위원

- 본래 650점 이상은 4년인데 3년 한 이유가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받았기 때문에 3년으로 했다는 것이 안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 2019년 9월에 채택된 모든 사업자들에게 보내준 사전기본계획(안)에는 어디에도 중점심사사항을 어겼을 경우 유효 기간을 1년을 내린다, 2년을 내린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얻은 사업자는 4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갑자기 1년을 내렸는지 그것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에 주신 여기 이런 문장, 이 부분에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심사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와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며, 조건부 재승인 시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언제 3년으로 부여하기로 고려를 누가 했습니까? 이 문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건부 재승인 시에는 3년으로 부여한다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사전에 사업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4년을 3년으로 내린 것인지, 물론 법에는 5년 가운데

2년까지는 감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내용인데 그 법을 세분화시킨 것이 바로 점수를 세분화시킨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철수 위원님께서 제안으로 700점 이상에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까지는 4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에게 갑자기 중점심사사항 때문에 1년을 깎는다면 이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으로 말미 암아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처벌이, 이것이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1년을 감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 그대로 사업자들에게 보내줬던, 알려줬던 규정 그대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점수를 얻은 사업자는 4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본계획에 보시면 유효기간 관련된 부분은 상단에 일반 규정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밑에 중점심사사항 관련된 과락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경우가 과락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에는 똑같이 3년으로 부여해야….

#### ○ 안형환 상임위원

- 여기에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재량권의 남용이지요. 행정관청이 예측 가능하게 보여 주어야지 마음대로, 분명히 많은 사업자를 유효기간 위에 650점에서 700점 미만이라면 4년을 생각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이기 때문에 1년을 더 깎아서 3년을 한다, 이런 조항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재승인 사전기본계획에서 위에는 점수 기준이고, 위에 점수 기준할 때는 중점심사사항….

#### ○ 안형환 상임위원

- 점수 기준에 유효기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유효기간이라는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에 4년인데 조건으로서 '중점심사사항에 해당 된 경우는 3년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업자, 이것만 본다면 중점 유효기간 여기만 보고 판단하지, 이것을 마음대로 '중점심사사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1년을 깎는다'는 문장은 한 문장도 없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3년을 깎을 수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행정청이 그렇게 재량권이 강합니까? 저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1년을,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지나 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얻은 사업자는 4년이라는 규정을 지켰으면 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이 부분 4년을 지키자는 것은 안형환 위원님의 주장이시고, 답변은 명확하게 듣고 그 주장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의결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답변을….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보시면 위에는 과락을 예정하지 않고 점수만 했고, 밑에서 보면 과락할 경우에 심지어 재승인 거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상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고, 법률자문도 마쳤을 때 이것은 3년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락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있다면 그런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해석상 3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무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중점심사사항에서 이중처벌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중처벌입니다. 저 혼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시지요.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처벌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존경하는 안형환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단서를 분명히 달아서 해석상의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리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안>, <2안>이냐, 이 이야기도 아직 논의하지 않았는데 재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문제는 거기에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그것은 법의 확대해석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법의 확대해석인데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4년으로 늘릴 수 있다, 이것은 확대해석이고 법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답변하신 것이니까 논의는 위원님들끼리 하시지요.

##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 허욱 상임위원

-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작은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위원님 의견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결국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안)을 짤 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정책국장이 설명한 대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그리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재승인 시 3년을 부여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점심사사항 역시 종편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승인 거부 까지도 가능한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에 대해서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맞은 사업자와 오늘 예를 들면 채널A와 조선방송 사이에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면 유효기간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재승인 그리고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3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변별력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성이 주어지는 행정의 재량권, 또 각 단계별로 방송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 승인 기간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편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중점심사사항과 유효기간과의 법적인 연계성 그리고 관련된 해석의 타당성을 볼 때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추후에 더 논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실 분 해 주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지금 보면 <2안>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1안>, <2안> 가지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방송사든 방송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송사의 독립과 역할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며 권력을 감시한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하는 노력과 또 하나는 TV조선이 명문화시킨 방송윤리강령이나 보도준칙 이런 것을 준수하겠다는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해서 정립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TV조선의 현실이나 과거를 보면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특정 권력 편들기, 혹은 권언유착이라는 말이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마한 막말과 편파 방송의 주범들의 독무대가 되었던 종합편성채널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종편 고정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식으로 정치권력과 방송은 스스로 경계 구분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막말·편파방송 정치인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마땅을 깔아준 종편 방송사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V조선 공정보도 가이드라인의 공정보도 불편·부당성 편이나 균형성 편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켰는데, 조선방송은 2010

년도에 논란 끝에 최초 승인을 받은 뒤에 2020년도 세 번째 재승인 심사 때까지 늘 막말·편파방송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선방송은 2014년에도 공적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57%를 기록했고, 2017년도에는 이보다 더 낮은 52%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항목에서 50% 못 미쳐서 과락을 받게 된 것인데,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심사를 맡았던 외부위원들의 의견도 승인을 취소하라는 그런 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청문위원들도 승인 취소하라는 이런 강력한 주문을 내릴 정도인데 2017년도에 재승인 심사 때 조선방송은 650점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625.13점을 받아서 승인 취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승인 취소가 되었어야 했습니다만 당시 방통위가 다시 조건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요 부문에서 과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개선될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승인 취소를 의견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방송은 그동안 진실을 추구하기는커녕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도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진실이 확립된 사건인데 느닷없이 정체불명의 탈북자를 출연시키고 북한의 소행으로 만들고, 또 빨갱이로 이렇게 낙인찍는 이런 일에 중심에 선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정정하고 사과했지만 진실과 역사를 부정·왜곡한다는 비판이 반복 된다는 것은 사회적 공기,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방송사의 존재를 스스로 저는 부정하는 셈이라고 보고, 또 공신력 있는 방송사로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확대하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방송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한·일 외교 분쟁이 벌어졌을 때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그런 비판을 받은 것도 과연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사인가에 대한 거듭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2020년 방통위가 새롭게 시도한 시청자 의견청취 및 “국민이 묻는다”에서의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서도 조선방송은 17,133건의 의견 중에서 승인을 취소하라는 불승인이 전체 75%에 해당되는 12,850건의 의견이 모아졌던 문제의 방송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TV조선의 방송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의 정신은 시청자위원회 제도나 또 음부즈맨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내실화되어야지만, 그렇지 못해서 내적 규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와서 짧은 기간에 20만을 돌파해서 청와대 답변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방통위가 답변을 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과 TV조선 심사위원회 의견서를 종합하고, 또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와 청문의 종합의견을 포함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공통된 요구는 모두 TV조선 방송 승인을 취소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 언론단체 역시 한 목소리로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TV조선이 자초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방통위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 될 동안 과연 제대로 제 역할을 했던가에 대해서도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분에서 거듭된 저조한 점수로 또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과락을 받았다는 점을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조선방송에서도 물론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노력이 시청자의 기대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지난 기간 동안 수차례 기회가 있었고, 또 방송의 공정책임과 공정성 확보에 거듭 실패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TV조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저는 <1안>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정리하자면 표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재승인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고, 김 위원님께서는 재승인 거부안의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조건부 재승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조건부 재승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조건부 재승인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가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건부라는 것은 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종합편성 채널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내줄 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여서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건, 즉 부관이라고 하지요. 부관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붙이는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 논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건을 붙이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사업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이 조건을 붙일 때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붙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건부 재승인의 기준으로 나온 것이 총점은 넘어섰지만 중점사항 점수 미달입니다. 배점 50%에서 공익성·공공성, 지역 이런 내용들이지요. 여기에서 0.4%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공정성 부분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사위원도 조건부 재승인의 기준인 중점심사사항에서 <1>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항목에서 공정성 문제를 가장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이 과연 방송의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누가 심사해야 할 것인가, 그 심사 자체가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지요. FCC에서도 '87년부터 공정성의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왜냐? 오히려 공정성의 원칙이 언론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역행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도 공정성 원칙이 공정 보도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언론규제에 직접 개입하도록 한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공정성의 원칙은 이미 폐기된 상황입니다. 특히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전파가 한정된 상황에서 그 전파의 영향력을 보고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다채널·다선택·다매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파의 희소성 원칙에 근거한 공정성 조항 자체가 큰 매력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 예속된 정부기구에 의해 이 공정성 문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 처음 만들 때 사회주의자들이 방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 때 이 공정성의 원칙을 이용해서 보수 라디오 방송을 많이 제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그 심사위원들은 과연 공정한가라는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정성 부분은 정량적 평가가 불가합니다. 심사위원들의 느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 때 공정성 문제, 심사 위원들의 공정성 문제까지 맞물려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가 잘못되어서 과락 점수를 맞고, 과락 점수도 0.4%이다, 그것 때문에 한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한다? 만약 문을 닫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정성 부분은 보도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은 보도·교양·오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성 부분, 보도에 관한 부분인데 보도가 문제 있다고 해서 종합편성 채널의 교양·오락까지 다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부분 때문에 어떤 특정 언론사를, 특히 방송사를 재승인하니 마니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만든 사전 기본계획(안)에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음’으로 이 조항을 들어서 저는 이번에 TV조선 같은 경우 조건 없이 중점심사사항을 고려하지 말고,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서는 “재승인할 수 있습니다”이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지 않고 규정 그대로 650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4년을 재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조건 없는 재승인이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신 것이네요?

####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알고….

#### ○ 김창룡 상임위원

-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우리 방송법에 공정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미국 것을 끌어와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공정성 논란이 그렇게 됐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지금처럼 이런 문제의 방송을 했다가는 방송사 문을 닫는 또 다른 강력한 법이 있다,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안 위원님은 그런 안을 제시했지만 저는 <1안>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께서 언론학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법에 “방송은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상당히 저는 선언적 의미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이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항목이지 그것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정부기구에서 그것을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은 시대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논의한다면 조건 중 선거방송 심의 위반 때문에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피해를 본 선거후보자나 정당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민사상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정청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받아서 처벌한다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말씀하셨고, 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육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승인에 관련된 의견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안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심사를 하는 방송법의 근본 내용 자체가 방송법 제6조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행 방송제도의 전반적인 제도적 틀, 그리고 운영체계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같이 종편이나 보도채널도 라이선스, 즉 특허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방송사업을 유지·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의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방송법, 또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통위 설치법에 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상업방송 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시장 추구, 시장주의적인 방송정책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공익적인 방송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문시장, 사상의 자유처럼 다종다양한 진입의 장벽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원성·다양성 그리고 상업적인 경쟁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의견이 수렴된다는 것이 미국의 수정헌법 정신, 그리고 미국의 언론자유의 논점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1987년에 FCC에서 공정성 원칙을 폐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액트(Telecommunication Act)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사례가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국의 방송제도 틀 내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의 내용들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난 3년간 종합편성 채널이 제대로 방송법에서 제시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제대로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방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에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011년 종편채널이 출범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역시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서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생존 애국지사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1,500여 분이 빗속에서 시위를 하고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재승인 취소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깊이 되새겨야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조선방송 의결주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7년 3월 24일 두 번째 재승인 심결 회의록을 잠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

되어 있습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재승인 조건을 추가개선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차례만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것이 2017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청문을 실시했던 청문주재자 의견도 다음과 같습니다. “(주)조선방송이 2017년 이후에 다양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이번 심사에서 과락을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무 개선을 위해서 집행 및 의결기구 등 지배구조 개선이 유효한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추가개선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조선방송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방송은 공적책무·공정성 관련된 문제의 개선의지가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 등을 반복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재승인 거부가 합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종합 소견은 2017년보다 콘텐츠 질이 개선되었지만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문주재자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숙고한 끝에 저는 의결주문 <2안>을 하되, 보완된 <2안>, 즉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2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방송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선방송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합점수가 650점을 넘은 데다 '17년 재승인 이후에 방심위의 법정제재 감소, 콘텐츠 투자 확대, 편성의 다양화 등 부과된 재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선방송이 지난 '17년 재승인 심사에서 625.13 점을 얻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데 이어 올해도 중점심사항목의 과락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승인 처분 취소의 4가지 조건에 추가해서 만약 다음번 심사 때 또 다시 종합점수 650점에 미달 또는 주요한 심사항목에 과락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재승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안>의 후반부인 3쪽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중점심사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즉, 올해와 똑같은 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안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붙임>에서 밝힌 재승인 조건 11가지와 권고사항 8가지 모두 조선 방송의 조건부 재승인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서 유효기간 역시 650점 이상이고 또한 과락이 없는 것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채널에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께서 조건 없는 재승인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혜 육 위원님께서는 의결주문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는 이런 조건부 재승인(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의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나온 안들을 저희가 표결을 하든 아니면 계속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든 간에 나온 안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안이 성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대해서 뭔가 의견 동의가 있으시고 재청이 있어야 안으로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안 위원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는 재승인(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으로 성립시키는 데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단 안을 내셨으니까,

○ 한상혁 위원장

-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안을 냈는데.

○ 한상혁 위원장

- 표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것으로 보고, 조건 없는 재승인(안)을 안건으로 성립시켜서 기존 안 2개에 하나를 더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허 옥 위원님이 제시하신 추가된 조건부 재승인(안)에 대해서도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 한상혁 위원장

- 안으로 성립할지 성립하지 않을지만 판단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그것도 안으로 일단 포함시켜야지요.

○ 한상혁 위원장

- 올려놓으시지요. 그럼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존 사무처에서 제시한 2개 안과 안 위원님과 허 위원님께서 제시한 각각의 안으로 해서 4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해서 더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의안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할까요?

○ 허 옥 상임위원

- 제가 발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 허 육 상임위원

- 존경하는 안형환 위원님 말씀의 취지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중점심사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기본계획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인해 주되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즉 부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행위의 본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특정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재량행위의 당연한 사안들로, 복잡다단한 현재의 행정처분을 감안할 때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안들입니다. 이를테면 채널A에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철회권 유보도 분명히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여러 가지 부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는 선에서 재승인을 해 주는데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과연 안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 안형환 상임위원

-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심사사항에서 두 조항입니다. 두 조항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두 사안입니다. 저는 물론 앞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 점을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사항으로 볼 것이 6개 조항이 있습니다. 6개 사항 가운데에서 굳이 이 두 조항을 중점심사사항으로 뽑히는 과정 자체가 저는 법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2개 조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정성적 판단이고, 그래서 뽑혔다고 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이 문제가 과락을 맞았다, 50%에서 0.4%로 과락을 맞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언론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국의 방송환경이 바뀌었다는 것, 아까 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부분이 공영방송 체제하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방송은 이미 상업적 시스템으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종편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KBS, MBC, EBS까지는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종편 상업방송화되어 있습니다. 다채널·다매체 시대는 이미 상업 방송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것도 정부기관이 한국처럼 이념적인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난번 사업자들에게 준 이것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맞았을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음' 이 조항을 고려해서 저는 '할 수 있다'로 보고 이 조항을 일단 거론하지 않고 유효 기간 조항만 들어서 65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4년의 재승인을 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잠깐만 언급을 하면 전부 점수도 넘고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특허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재승인을 해 줄 수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근본적인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 한상혁 위원장

- 안건은 성안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의견이 3개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3개 안 가운데….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4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4개 각자 다 다르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4개 안이지요. 그런데 크게 따지면 3개 안 아니겠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거부.

○ 안형환 상임위원

- 김창룡 위원님 말씀 거부,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 또 1건 조건 없이 승인하자는 것인데 이 3개를 정리해서 한 안건을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어떻습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4개 안을 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재승인

거부, 조건부 재승인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 없는 재승인 3가지를 놓고 간단히 의견을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을 놓고 하면 다시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부가하는 데 있어서 저도 조건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따로 수정해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에 중요심사항목에서 과락되거나 총점이 650점이 안 됐을 때는 재승인·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부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언론인들도 많이 방청하고 계시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을 정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안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잠깐 늦어도 4시까지는 의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가급적 그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신 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잠깐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래 4가지 안이 아니라 3가지 안이라는 것은 조건부 재승인에 있어서 조건은 수정 조건부라는 것에만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조건부에 대한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가지 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허 옥 상임위원

- 그렇지요. 조건부에 다른 조건까지 불인 수정안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나머지 현재 <2안>에 관련해서는 그것으로 <2-1>이라는….

##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에 전에 발언한 것이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허 육 위원님께서 새로 부가한 조건을 불인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조건은 아니고 어쩌면 ‘행정 의지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왔으니까 그것들을 주문에 담아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 신청인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의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충 내용에 대한 의견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잠깐 정회를 하면서 의안을 조정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40분 정회 】

【 16시 08분 속개 】

## ○ 한상혁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수정안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안을 완성하기로 하고, 각자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제시한 <2안> 그것이 기본골격이고, 아까 존경하는 허 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포함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안> 가운데 조건부 재승인을 함께 있어서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붙임2>의 재승인 조건 중 <2>, <3>, <4>, <5>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항 중 <2>번, <3>번은 별 문제가 없고, <5>번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이 규정은 일반조건으로 내려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심의에서 법정 제재의 전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이번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른 법정제재 2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종래보다도 두 항목이 더 들어갔습니다. 심의규정 제21조 제3항 인권 보호 부문과 제25조 윤리성 조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추가됐을 경우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5건으로 조정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허 육 상임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2안>의 유효기간, 조건부 승인과 유효기간 그리고 뒤에 재승인 처분 취소의 <2>, <3>, <4> 조건 가운데 저는 명시적인 기준으로 선언적 내용들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 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중점심사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적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2안>의 주문 첫 번째 다음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으로 한다. 다음에 동그라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주문에 추가를 한다, 이것이 안입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일단 전제는 다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합니다만 자꾸 조건을 계속 붙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성안된 안은 <1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1안>과 지금 방금 <2안>이 수정된 수정된 <2안> 이렇게 2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어느 안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금 자세히 못 들어서….

○ 한상혁 위원장

- 거부안 <1안>과 지금 <2안>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되었으니까 수정된 <2안> 2가지 안건 중에….

○ 안형환 상임위원

- 왜 <3안>은 빼십니까? <3안> 조건 없이 승인하자는 것.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아까 조율한 것으로 봐서….

○ 허 육 심사위원

- 아까 제시했던….

###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아까 방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 ○ 안형환 상임위원

- 거기에서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었지요.

### ○ 한상혁 위원장

- 그럼 조건 없는 재승인(안)을 <3안>으로 해서 이 3개 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씀하시고….

### ○ 표철수 상임위원

- 재승인 심사는 여러 가지 사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심사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심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건을 부가하는 것 자체도 규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고 절제된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안, 수정안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더 이상의 조건을 계속 달면서 이렇게 계속 승인을 허락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런식으로까지 계속 문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을 정도로 저는 정말 종합방송채널사업사들이 다시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분명한 조건을 단다면 저는 승인 취소하라는 <1안>에서 <2안>이라는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 허 육 상임위원

- 저도 수정된 <2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안을 포함해서 제가 아까 붙였던 그 내용이 포함된 수정 <2안>을 지지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안 위원님.

###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조건 없이 재승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한다면 제가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결 절차를 진행할까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좋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이 모아지긴 했는데 굳이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저 혼자 내봤자 소수 의견인 것 같고, 다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수정된 <2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수정된 <2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록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에 대해 <불임2>와 같이 조건 및 권리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중점심사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불임2>의 재승인 조건 중 <2>, <3>, <4>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재승인 조건 중에는 <4>번 조건에서 기존 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 4건 이하를 5건 이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하나만 실무진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선방송의 경우 이른바 일진 아웃제, 이것이 영구히 출연을 정지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개선됩니까?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선방송 측에서는 일진 아웃제의 경우에 무기한 출연정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채널에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재확인을 위해서 읽어주시지요.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주)채널에이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채널에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조건 및 권리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으로 한다.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가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이 부분도 조금 전에 TV조선 논의를 하면서 수정된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표 위원님께서 그 부분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 ○ 표철수 상임위원

- 원래 여기에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취재 윤리와 관련된 사안은 방통위가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재승인 심사기간 중에 이런 사안이 생겨서 사실확인 차원에서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취재과정에서 있었던 취재기자의 일탈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기획한 것인지 회사 차원의 기획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방송 언론생활을 해 온 제 경험에 비추어서 회사 차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기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안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형태의 조건 부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예, 또 말씀하시지요.

### ○ 허 육 상임위원

- 최근 불거진 (주)채널에이의 공정보도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자율 심의와 내부 윤리강령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널에이에 대한 철회권 유보를 포함시킨 의결주문에 저는 동의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철회권 유보를 명시해서 재승인을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종편 채널사업자 재승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채널에이의 공정보도 위반사건의 처리를 놓고 일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주)채널에이의 기존 방송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고 재승인 심사를 다시 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채널에이의 자체 진상조사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승인을 미룬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둘째는 (주)채널에이의 공정보도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취재윤리 위반사건이라는 표현 외에 협박 취재사건, 검언 유착 사건 등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의결서에 취재윤리 위반사건이라고 표현할 경우에 사건 자체를 기자 개인이 특종을 위해서 과도한 취재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을 축소시켜서 예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보도 위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건이 보도본부 간부와 회사 경영진이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취재의도와 취재방법 등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 수준을 넘어서 검찰개혁의 무산, 또는 선거 개입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채널A가 재승인 심사를 받기 전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기존 심사 점수를 그대로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권의 유보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철회권의 유보는 허가나 승인 해제 조건의 특별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철회권이 유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회조건을 명시해서 공익상 필요라고 하는 요건을 갖춘 만큼,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의 공정보도 위반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질 때까지 재승인을 연장하는 방안과 철회권 유보를 포함시킨 재승인 처분(안)을 형량, 즉 저울질해 볼 때 후자가 재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임>에서 밝힌 (주)채널에이의 수정된 조건들은 아까 조선방송과 마찬가지로 수정되어야겠지요. 그 수정 사안을 담은 13개 재승인 조건, 그다음에 또한 4가지 권고사항 모두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 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주문에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TV조선 때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채널에이 같은 경우 과락 점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취재기자의 윤리 관련 건을 가지고 방송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취재윤리 관련 건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재기자의 일부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방송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의 자율심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본다면 이것은 게이트키핑(gate keeping)에 의해서 이 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런 조건을 달기 시작한다면 어느 언론사가, 어느 방송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조선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보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송편성은 보도·교양·오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도와 관련된, 또 취재윤리와 관련된 일부 기자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보도와 관련된 그것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면 나머지 교양·오락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방송의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부분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 김창룡 상임위원

- (주)채널에이는 심사결과 점수나 배점 여러 항목에서 승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피해자가 최소한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의 저널리즘이 정말 다시 초라한 그런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 언론이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또 다른 사건이고,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것이 무형의 큰 피해를 우리 언론계 전체에 가져온 사건이다, 아직까지 그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지금 이 시점에서 (주)채널에이 소속기자의 방송윤리의 문제로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검찰 출입기자와 검찰의 검언유착이라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다시 이슈가 되어서 취재원과의 녹취록과 서신 내용의 부분 공개는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하더라도 기자 개인의 윤리 문제 차원을 넘어서 협박죄나 이런 형법 위반이나 방송법 위반의 의혹까지 저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철회권 유보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야 한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방통위에서도 채널에이 대표 그리고 진상조사위원장과의 진술을 듣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차 제대로 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기자 선에서 저지른 단순한 윤리강령 위반에 한정되는지, 부장이나 국장 이런 사항을 어떤 형태로든 보고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정말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러면 어디까지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입기자가 검사장과 유착되어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이용당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장과의 친분 과시용으로 일종의 기자의 자작극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말처럼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이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이야기들, “3월 말, 4월 초가 좋다”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불리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을 허가한다는 것은

자칫 방통위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회권을 유보해서 조건을 단다는 허 옥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표 위원님, 조건 <7>번 법정제재 4건, 5건 이 부분….

○ 표철수 상임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채널에이 조건 가운데 <7>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법정제재, 이것은 (주)조선방송과 똑같이 여기에도 인권보호 부문과 윤리성 부문이 새로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4건을 5건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허 옥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 위원님.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만 수정하면 원안에 동의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표철수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채널에이 조건 부분에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그런 함의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지금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 주문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우가 회사 차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일 수도 있고 외부에 개입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무작정 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그 문안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처음 발언한 대로 회사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회사 내 조사, 또 외부자문위원회의 검증 이런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거기에 실제로 합의가 회사 차원에 그런 것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이냐고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런데 회사 차원이라는 표현을 여기 주문에 넣기에는 '회사 차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 한상혁 위원장

- 여기에 있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부분으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승인·재승인을 철회하는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청문을 거치고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장님, 부연설명도 있었으니까,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이 건에 반대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4건이 5건으로 수정된 원안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이 부분도 굳이 표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아니,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표결하지요.

○ 한상혁 위원장

- 예, 그러시지요. 표결 준비를 해 주시지요. 보니까 <1안>이 성립 안 됐네요. <1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재승인 없는,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되겠네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어차피 무기명 투표가 아니니까 표결을 따로 준비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의사를 명확히 다 밝혔고 그것이 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냥 표결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표결해도 같은 절차가 나올 것 같아서 안 위원님이 이 사안에 관련된 반대의견들을 명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수정된 이 의결안으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입장이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표결을 한들 안 한들 이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소수인 <1안>은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방송에도 똑같이

부여된 사항인데, 홈쇼핑 연계편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받은 사실을 반드시 3회 이상 고지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협찬을 받았습니다’라고만 고지하면 시청자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안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래서 기존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문구 라든가 어떤 식으로 고지할 지에 대해서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다만, 이것이 협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찬고지에 관한 방통위 규칙에 어긋나면 그 취지와는 달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주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실은 홈쇼핑 연계편성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모 방송인데, 이것은 염밀히 말하면 시청자를 속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뻔히 바로 옆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제품이 굉장히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기 때문에 방금 실무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반드시 시청자들이 ‘아, 저것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만든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5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하실 분이 최소한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규정은 올해 말에 있게 될 지상파 재허가에서도 반드시 조건으로 부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보·막말·편파 방송, 인권보호, 윤리성 이것과 관련된 방심위 법정제재,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관련 이런 조건들도 반드시 지상파 재허가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편이나 지상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우리 정책목표에도 부합되고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가지 연계 편성 부분이 지상파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종편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제재 그 부분은 나중에 지상파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원래 법정제재 4건 오보·막말·편파 부분은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종편이 초기에 이것이 심각했기 때문에 조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상파가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봐서 이것이 심각하다면 지상파도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드리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상파가 홈쇼핑 연계편성이 많다고 한,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 ○ 표철수 상임위원

- 지난번에 조사한 데 따르면 특정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일정 기간에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종편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왜 오보·막말·편파 방송 이런 것은 지상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5기 방통위원회에서는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정말 앙청 드립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5기가 될 것 같으니까 주신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5기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건을 붙여서 한 이 부분들은 만약 방송사에서 작정하고 법정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그런 입법이나 그런 행정처분을 할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청의 기본원칙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법 문제를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사무처에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만일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정성 문제는 충분히 토론의 가치가 있고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심사의 가장 근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방송법에 정해진 방송법과 그리고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공정성이라는 조항이 곳곳에 되어 있고, 심사기준에도 첫 번째에 공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점심사사항에도 또 위원회에서 합의하신 중점심사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일 근간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성 문제는 법과 기준에 따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 심사 건을 제가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 결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5기 때는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선언적 의미인 것인지, 또 이 부분이 과연 행정청이 어디까지 재량권을 발휘해서 처분 내릴 수 있는 조항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 허 옥 상임위원

- 지금 행정권에 있어서 재량의 남용 부분에 관한 우려를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5기 때 충분히 검토를 한다면 저는 방송·통신 행정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법, 그리고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법치행정입니다. 행정이 법률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법률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 행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복잡다단한 행정행위 전반을 법률로 다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조리라고 하는 일반행정 법을 보완하는 원칙 중 평등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그것이 결국은 사업자들의 피해 최소화의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피해 최소화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4기 방통위의 정책적 목표가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 구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사업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본질적 주인인 국민의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5기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피해 최소화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시청자와 이용자들에게 진정으로 피해가 최소화되고 있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 행정처분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 가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속기록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유념하고 5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방송, 저희들이 반드시 채택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과도한 확대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항상 국민들 앞에 겸허하고 사업자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임무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서….

####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지난번 보도전문 방송에 대한 일부 방송사에 대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룬

두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이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 원칙이 지금 지역민방을 비롯한 지상파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적용될 수 있게 이번 연말에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 위원님과 5기를 같이 할 것 같은데 우려가 앞섭니다. 저는 방송사업자에게도 서비스하고 최대 도움을 드려야 된다,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존재 목적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대원칙, 그리고 공적책임을 부여한 것은 바로 시청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최대한의 정보를 서비스 한다는 그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규제가 아니라 방송 스스로가 만든 시청자위원회 제도라든가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자신들이 만든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지켜 주십사,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에 조건을 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사업자도 생각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방통위는 최종 미디어 소비자인 시청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내실화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신 말 100%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의 존립 근거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는 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여전상 우리 국민들이 또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현실 여전상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치적 쟁점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방송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기구가 방송을 예속화시켜서 빅브라더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방송 행정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지적에 안 위원님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 ○ 안형환 상임위원

-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올해로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청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편PP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이 묻는다”라는 시청자 의견청취 방식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다양하고 건설적인 여러 의견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고 종편PP 역시 한 번 더 자기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종편PP 스스로가 특허사업자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7. 기 타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8. 폐 회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49분 폐회 】